## 용인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

제정 2015. 9. 21 훈령 제2호(용인시의회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용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·정확·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진정서 등"이란 진정인이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, 탄원서, 문의서, 호소문, 의견서 등(이하 "진정서"라 한다)을 말한다.
  - 2. "동일한 내용의 진정서"라 함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제출)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.
  - ② 3명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한다.
- 제4조(접수)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.
  - ②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·비치한다.
  - 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.
- 제5조(불수리)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.
  - 1.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
  - 2.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
  - 3.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 또는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
  - 4.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출한 경우,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
  - 5. 진정인(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)의 주소, 성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

#### 용인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

- ② 사무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, 제5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.
- 제6조(회부) ① 사무국장은 접수한 진정서를 진정서 처리부에 기재하고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정 요지서를 작성·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한다.
  - ② 진정서의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.
- 제7조(처리기간) ①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진정인에게 기간연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제8조(처리) ① 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,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장은 진정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9조(처리결과 통지) ① 의장은 위원회가 보고한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제1호서식]

# 진정서 처리부

접수 번호	접수일	건 명	진 정 인		소관위원회		처 리 결 과			
			명	주 소	성 명	위원회	회부일	통지 일	처리내용	비고

## [별지 제2호서식]

# 진 정 서 접 수 증

건 명					
접수번호					
접 수 일 자					
인 적 사 항	주 소				
친 경 기 경	성 명				
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.					
용인시의회의장(인)					

## [별지 제3호서식]

# 진 정 서 요 지

접수일자		접수번호	-			
진 정 인	주 소	•				
	성 명	연 락 처				
건 명		•				
(요 지)						
(五 ^	(요 시)					

## [별지 제4호서식]

# 진 정 서 처 리 결 과

접 수	일 자		접수번호	
진 정 인	주 소			
선 경 현	성 명			
위원회 회부일			처 리 일	
(처리결과)				